

하나 해외이주·유학클럽서비스 이용 약정서 신구조문 대비표

변경전	변경후	비 고
1. (내용생략).	1. (좌 동)	
2. 은행에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, E-mail 주소 등을 변경하거나 ~(이하생략)	2. 은행에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변경하거나 ~(이하좌동)	E-mail 주소변경 사항 삭제
3. (내용생략).	3. (좌 동)	
4. 본인의 보유계좌에 대한 거래내역/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“수시지급청구서”를 Fax 또는 E-mail로 송부하여 요청하겠으며, 본 약정서로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, E-mail 주소와 일치하고,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본인이 요청한 해외주소 또는 신고된 E-mail 주소로 은행이 거래내역/예금잔액 증명서를 제공한 경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, 거래내역 /예금잔액증명서 우편발송의 경우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합니다. ~(이하생략)	4. 본인의 보유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/예금잔액증명서 /금융소득 내역/원천징수영수증 이 필요한 경우 “수시지급청구서”를 Fax 또는 E-mail로 송부하여 요청하겠으며, 본 약정서로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, E-mail 주소와 일치하고, ARS에 의한 계좌 비밀번호 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본인이 요청한 해외주소 또는 신고된 E-mail 주소로 은행이 거래내역/예금잔액증명서/금융소득내역/원천징수영수증 을 제공한 경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, 거래내역/예금잔액증명서/ 금융소득내역/원천징수영수증 우편발송의 경우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합니다. ~(이하좌동)	금융소득내역/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업무 추가
5. (내용생략)	5. (좌 동)	

하나 해외이주·유학클럽서비스 약관 신규조문 대비표

구 약관	신 약관	비 고
제 1 조 ~ 제 2 조 (내용생략)	제 1 조 ~ 제 2 조 (좌 동)	
제 3 조 (서비스의 종류)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. 1. (내용생략) 2. 자금운용 및 보관 서비스 : 여유자금을 고수익 상품 으로 운용하거나 대여금고를 이용토록 제공	제 3 조 (서비스의 종류) (좌 동) 1. (좌 동) 2. 자금운용 및 보관 서비스 : 여유자금을 금융상품 으로 운용하거나 대여금고를 이용토록 제공	정확한 금융용어사용
제 4 조 ~ 제 13 조 (내용생략)	제 4 조 ~ 제 13 조 (좌 동)	
제 14 조 (거래내역서/예금잔액증명서 송부)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고객이 요청한 해외 주소 또는 신고된 E-mail 주소로 거래내역/예금잔액증명서 를 송부한다. 1. (내용생략) 2. (내용생략) ② (내용생략). ③ 은행이 제1항에 의해 거래내역/예금잔액증명서 를 송부한 경우 고객이 이를 받지 못하더라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제 14 조 (거래내역/예금잔액증명서/금융소득내역/원천징수영수증 송부)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고객이 요청한 해외 주소 또는 신고된 E-mail 주소로 거래내역/예금잔액증명서/금융소득내역/원천징수 영수증 을 송부한다. 1. (좌 동) 2. (좌 동) ② (좌 동) ③ 은행이 제1항에 의해 거래내역/예금잔액증명서/금융소득내역/원천징수영수증 을 송부한 경우 고객이 이를 받지 못하더라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 않는 한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명칭통일 금융소득내역/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업무 추가 금융소득내역/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업무 추가

제 15 조 (변경, 사고사항의 신고)

① 은행에 **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변경, 신고한 E-mail 주소변경 등을**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신고(약정해지,변경)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제출방법은 제6조를 따른다.

(신 설)

② (내용생략)

제 16 조 ~ 제 21 조 (내용생략)

< 부 칙 >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**2013년 02월 21일부터** 시행한다.

제 2 조 (계좌이체 제한)

제12조에도 불구하고 **이 약관 시행일 전에**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대한 타인명의 계좌이체 서비스는 2013년 02월 21일부터 금 오백만원 이내로 제한되며(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FAX로 한정),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한다

제 15 조 (변경, 사고사항의 신고)

① 은행에 **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 변경 등을**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신고 (약정해지,변경)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제6조를 따른다.

② **고객이 신고된 E-mail 주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E-mail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.**

1. 고객이 FAX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관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였을 때

2. 고객이 E-mail로 요청하는 경우 수시지급청구서와 이용약관서의 인감 또는 서명이 일치하고, 수시지급청구서를 보낸 E-mail 주소와 이용약관서에 기재된 E-mail 주소가 일치하였을 때

③ (좌 동)

제 16 조 ~ 제 21 조 (좌 동)

< 부 칙 >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**2014년 2월 01일부터** 시행한다.

제 2 조 (계좌이체 제한)

제12조에도 불구하고 **2013년 2월 21일 이전에**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대한 타인명의 계좌이체 서비스는 2013년 02월 21일부터 금 오백만원 이내로 제한되며(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FAX로 한정),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한다.

제신고 신청서 제출
사항 변경

E-mail 주소변경
방법 신설

항 체하

약관변경일

일자명기

▣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